

기안봉시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시 30310-24PP3 (전화번호 923-7415)	전결과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7참장	전결	
시행일자	1985. 6. 14		
보존연한			
보조기관	부청장 도시경제기획관 도시경제기획관		
기안책임자	이성영 장규택		
경유 수신 참조 제출	(제1안) 내부검제 국안참조 도시계획 시설(시장) 지적 승인		
<p>1. 시설 30310 - 303 (85.6.14)호와 관련 입니다. 1985.6.14</p> <p>2. 위 관련 공문으로 우덕구 관내 도시계획 시설(시장)이 서크 제386호(85.6.14)로 결정 되었기</p> <p>3.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안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p> <p>첨부 도면 1부. 끝.</p>			
(제2안)			
<p>서울특별시 도시 제 호</p> <p>도시계획 시설(시장)지적 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 제 386호 (85.6.14)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시장)이 결정된 성북구 권음동 540 일대(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p> <p>2. 관내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경제기획관에 비치하고 본청에</p>			

경기도 도시계획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청
도시경제기획관
도시경제기획관

사본

건물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6

서울특별시 시장

도시계획 시설(시설)지적 승인조서

(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시설	소매시장	성북구 결음동 540-2외3필지	9,093.7	-

(제3안)

수신 서울특별시시장 (건설부장관)

참조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발신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시장)

제목 같은 건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86호 (85.6.14)의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시장)

결정된 성북구 결음동 540 일대(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면 2부. 끝.

(제4안)

수신 서울특별시시장 (총무처장관)

참조 공보관 (공보관)

발신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시장)

제목 시(관)보 게재 의뢰

다음과 같이 시(관)보 게재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

다. 근거법규 : 도시계획법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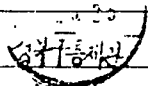
첨부 : 고시문 사본 3부. 끝.

(제 5 안)

수신 - 서울특별시청

참조 시면과장

제목 고시번호 부여 및 시장 적인 날인 신청



1. 우리구 도시계획 시설(시장)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
기 다음과 같이 고시번호 부여 및 시장 적인 날인 신청 합니다.

다 음

가. 신청근거 : 도시 752 - 432 (85.5.27)

나. 신청문서면 : 건설부 보고문총무처 관보 게재 의뢰관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 6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같은 건

1. 시설 30370 - 303 (85.6.14)호와 관련임.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 시설(시장)이 서고 제386

회(85.5.14) 결정 되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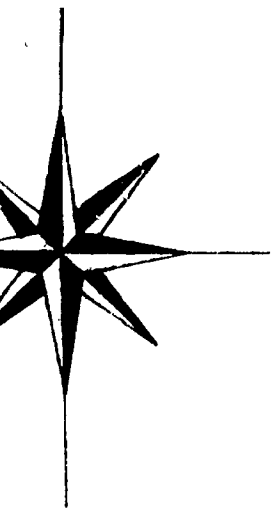
3.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지
적승인하고 고시하였기 불지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함(단 별첨 도면은 복제
복사 외부유출을 엄금 함)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도면 1부. 끝.



수신처 : 건축과. 세무2과. 수도공사과, 토목과. 지적계. 강남3동장. 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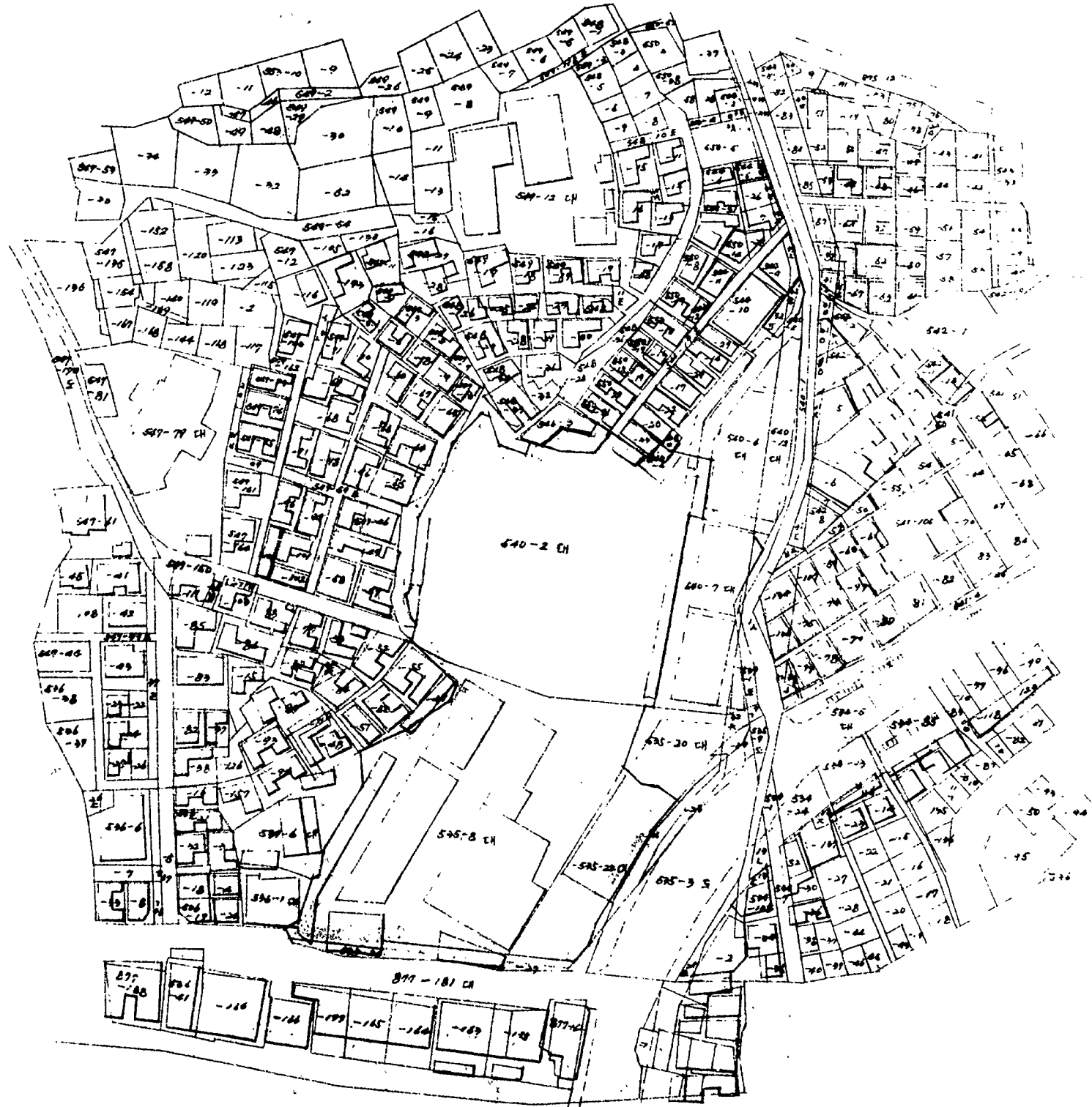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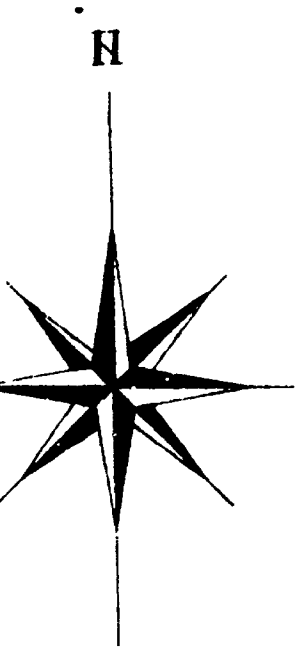
지적도

S=1:1200



現況測量圖

縮尺 1:1200



서울특별시

시설30310-307

731-6346

85. 6. 14.

수신 **성북** 구로, 동대문구청장

참조 도시정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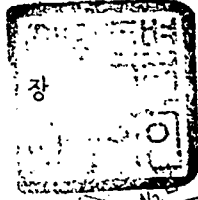
제목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 변경결정

1. 귀구관내 도시계획시설(시장)이 별첨과 같이 결정및 변경결정되었기 통보하니 도면정리및 관계과에 통보하여 도시계획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 도시계획법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 같은법제14조의2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후 보고토록할것
 3. 사업시행허가시에는 타법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시행하기바람
- 첨부 고시문 사본및 도면각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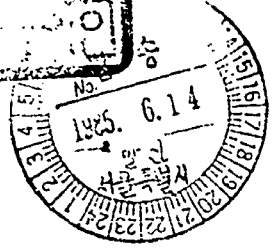
문 서 처 리 인	일기	1985. 6. 17	성북구
	장수번호	10-898호	1985. 6. 17
	처리과정		
	처리결과		



서울특별시



				구청장
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부구청장	
				423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286 조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 변경결정 고시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및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제12조및 같은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85. 6. 14.

서울특별시 장

○ 결정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M ²)	비 고
신설	시장	성북구길음동 540	9,093.7	
"	"	구로구고척동269-1일대	2,877	
기정	"	동대문구중화동307-1일대	6,600	
변경	"		3,300	감3,300M ²



○ 결정및 변경결정 도면: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상략)